
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건 서

(박춘선 의원)

2024. 2.

기후환경본부

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1562호,
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

대규모 행사에 대하여

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계획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

일회용품 감량 등 자원순환 측면에서도

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,

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

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

폐기물 배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

발의된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.

- ☐ 다만, 개정안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 체계구축 등
준비 기간이 필요한 바 시행 시기는 조례 공포 후 6개월
이후로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- ☐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